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67 발의연월일: 2021. 7. 1.

발 의 자: 송석준 • 구자근 • 박덕흠

박형수 · 배준영 · 유경준

이개호 · 이종배 · 이헌승

장제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 명위원회가 지명(地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군·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 측량,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법률 외에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1호·제1호의2·제11호 및 제3조).
- 나. 공간정보의 활용 및 구축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정함(안 제15조제2항).
- 다.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설치근 거를 규정함(안 제91조).
- 라. 시·군·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91조의 2).
- 마. 결정된 지명의 재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91조의3).
- 바.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4).

.

법률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정보를 말한다.
-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 11.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다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해양지명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등은 제외한다.

제3조 중 "관리에"를 "관리, 지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도등 중에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을 "지도 중

에서 다음 각 호의"로, "기본도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것
-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인 것 제91조의 제목 "(지명의 결정)"을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 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 1.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 2. 지명 관련 정책의 수립
 - 3. 지명의 연구·개발 및 보급
 - 4.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폐지와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소속으로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 원회를 둔다.
 -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

-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
 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
 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 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 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도 지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

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 명위원회 또는 시·도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시·도지사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명 위원회에 각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재심의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구)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 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 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 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 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 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 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 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 <신 설> 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 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 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 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 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 다.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12. ~ 34. (생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저 과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다.

- 한 지도등의 간행)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11.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	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공공의	이용
을 목적으로 만든 지물	물(地
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
을 말한다. 다만, 「해양	조사
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u> </u>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해양
지명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등은 제외한다.	

12. ~ 3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리, 지명	
•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 한 지도등의 간행) ① (현행과 같음)

(2)
<u>지도 중에서 다음</u>
<u>각 호의</u>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
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신 설>

③ ~ ⑥ (생 략)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 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 📗

-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 된 것
-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 인 것
- ③ ~ ⑥ (현행과 같음)

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 원회를 둔다.

- 1.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 2. 지명 관련 정책의 수립
- 3. 지명의 연구·개발 및 보급
- 4.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 변경·폐지와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시·도 소속으로 시· 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u>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u> 둔다.
-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

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 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 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 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 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결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 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 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 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 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 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 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 | <삭 제>

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 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u><삭 제></u>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 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 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 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 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 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 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명위원 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도 지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을 결정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 통부장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결정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

 정·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시·도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명위원회에 각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 가지명위원회가 재심의 한 결 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고시하여 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구)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 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